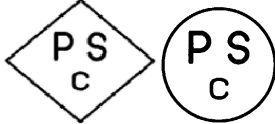


PSC (일본 소비생활용품 안전인증)

1. 개요

<p>■ 정의</p>	<p>Product Safety of Consumer Products(일본소비생활용품안전인증)</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인증으로서 소비자제품안전법에서 지정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PSC 마크를 부착하기 위하여 적합성동등 검사를 수행한 후 합격서를 획득하여야 한다. - 특정 소비재(유아용 침대, 휴대용레이저응용장비 등)의 경우 METI 지정 인증기관에서 시험수행과 인증서발행 업무를 수행하고, 비특정 소비재(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관련 제품 등)의 자기적합선언 방식으로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다.
<p>■ 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TI(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www.meti.go.jp
<p>■ 대상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소비재: 유아용 침대, 휴대용레이저응용 장비, 욕조용 온수순환기 - 비특정 소비재: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관련 제품, 승차용 헬멧, 등산용 밧줄, 석유온수기, 석유보일러, 석유난로
<p>■ 적용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p>■ 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sumer Product Safety Law
<p>■ 인증마크</p>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노화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간 사용 제품 안전 검사 표시 제도가 2008년 소비자제품안전법 개정에 따라 PSC대상 제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 장기간 사용 제품 안전 검사 제도는 ※ 특정 관리 제품에 대하여 제조 수입 업체가 제품에 디자인 표준 사용 기간(안전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시간), 검사 기간, 검사 요청을 쉽게 하기 위한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특정 관리 제품 소유자는 제조 수입 업체에 대한 소유자 정보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정보)를 제공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검사 등의 유지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장기간 사용 제품 안전 표시 제도는 전기제품 중, 선풍기, 에어컨, 환풍기, 세탁기 (세탁 건조기 제외), 브라운관 TV 제조 수입 사업자에게 해당하며 해당 제조 수입 사업자는 제품 설계의 표준 사용 기간과 노화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특정 관리 제품 : 실내 식 가스 순간 온수기 (도시 가스용, LP 가스용), 실내용 가스 보일러 (도시 가스 용 LP 가스 용), 석유 온수기, 석유 보일러, 밀폐 연소식 석유 온풍 난방기, 내장 식 전기 식기 세척기, 목욕탕 전기 건조기

2. 인증개요

PSC는 Product Safety of Consumer Products를 줄인 것이다.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일본은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는, PSC 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PSC마크 대상품목은 제 3자 인증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검사가 의무화되어있는 특정소비재 품목과 자기적합선언방식으로 인증획득이 가능한 특정소비재 이외의 품목으로 구분된다.

PSC는 소비자제품 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Law)에 따라 운용되며 이 법률은, 소비 생활 용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특정 제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규제하는 동시에 소비 생활 용 제품의 안전 확보에 대하여 민간 기업 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이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쇼와 48 년에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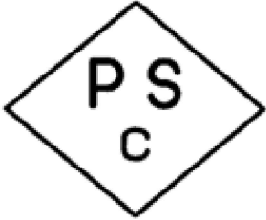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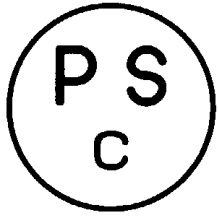
덧붙여, 2008년 2 월 소형 가스 온수기에 관련된 사망 사고 등 제품의 장기 사용에 따른

열화 (노화)가 주원인이 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08년 소비자제품 안전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제품의 노화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사용 제품 안전 검사 표시 제도가 추가적으로 PSC 대상 제품에 적용되었다.

대상 소비 생활 용 제품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의미하지만, “선박”, “소방 설비”, “식품”, “도로 운송 차량”, “고압 가스 용기”, “의약품”, “의약 부외품”, “화장품”, “의료 기기” 등 기타 법령에서 별도로 안전 기준을 마련한 제품의 경우 소비자제품 안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3. 인증품목 및 인증 검사기관

특정 소비재 제품의 경우 시험과 인증발행이 지정인증기관에서 수행된다. 단, 비특정 소비재 제품의 경우 자기적합선언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정인증기관 외 시험소에서 시험하거나 제조업자가 직접 관련 규격에 따라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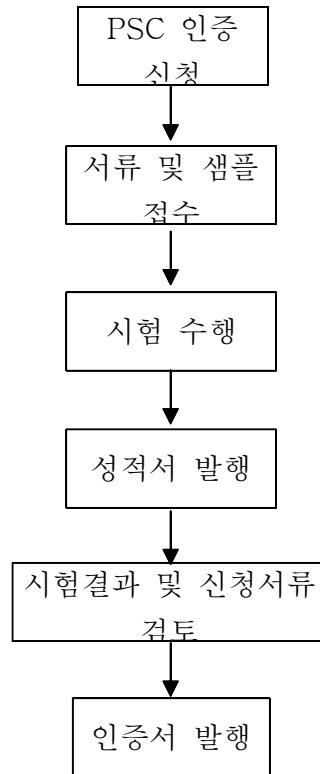
특정 소비재 제품		국내 등록 시험 기관
	유아용침대	(재) 일본 문화 용품 안전 시험소
	휴대용레이저응용 장비	(재) 일본 품질 보증기구 (주) UL Japan (주) 코스모스 코퍼레이션
	육조 용 온수 순환기	(재) 전기 안전 환경 연구소(JET) (재) 일본 가스 기기 검사 협회 (주) UL Japan 재단 법인 일본 연소 기기 검사 협회 (주) 코스모스 코퍼레이션
특정 소비재 이외 제품		검사 기관
	가정용의 압력 냄비 및 압력 관련 제품	(재) 일본 문화 용품 안전 시험소 (재) 전기안전환경연구소
	승차용 헬멧	(재) 일본 자동차 검사 협회
	등산용 밧줄	(독) 제품 평가 기술 기반기구 北征東 지소
	석유 온수기	(재) 일본 연소 기기 검사 협회
	석유 보일러	(재) 일본 연소 기기 검사 협회
	석유 난로	(재) 일본 연소 기기 검사 협회

4. 인증절차 및 제출서류

(1)인증절차

PSC ‘적합성 동등검사’인증서는 해외제조업자가 인증기관으로 직접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일본 수입사업자를 통해 신청하게 된다. 덧붙여, 일본 내에서 수입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METI에 대한 사업신고는 일본수입업자에 의해 수행된다.

신청자는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샘플과 함께 송부한다. 인증기관은 신청서류와 샘플을 접수 하고 제품시험, 성적서 발행을 한다. 인증서는 최종 검토 후 제조업자 앞으로 발행된다.



(2) 제출서류

- 적합성 시험 신청서
- 형식구분표
- 제품의 구조, 재질, 성능 설명서
- 검사설비목록
- 품질관리보고서
- 기술문서(도면, 사진 etc.)
- 출장시험 신청서

소비 생활 용 제품 안전법 제 12 조 (특정소비재의 적합성 시험)에서는 일본 제조업체 또는 수입 업체는 특정소비재(specified product; 욕조 용 온수 순환기 etc.)에 등록 검사 기관의 적합성 검사를 받고 그 증명서를 취득하여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PSC 적합성 검사는 (1) 해당 제품의 기술 기준에의 적합성 확인, (2) 제조 공장 등의 검사 시설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각 검사는 신규 또는 갱신여부에 상관없이

적합성 시험 신청 때마다 실시한다.

5.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유아용 침대의 인증유효기간은 10년, 휴대용 레이저응용장비, 욕조용 온수순환기의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또한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기관의 추가적인 공장심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6. Contact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 주소: 1-3-1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01, Japan
- 홈페이지: www.meti.go.jp
- TEL: +81-(0)3-3501-1511